웅지세무대학교 총 학 생 회	학교행사 안전관리 운영지침	제정일자	20..12.16
		최근개정	-

웅지세무대학교 총학생회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웅지세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교내·외 학생단체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학교행사(이하 "행사"라 한다.)란 대학 및 산하기관, 허가된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등 이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② ‘학생자치기구'라 함은 총학생회, 대의원회, 등록된 동아리 등 대학에서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.

③ "안전관리책임자"라 함은 학교행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 지침은 부서 및 학과,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학생단체행사에 적용한다. 다만, 대학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 임의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조직) ① 행사 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예방, 대응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교학처장을 "학교행사 안전관리 총괄책임자(이하 "총괄책임자" 라 한다.)"로 한다. 단, 교학처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대행인 경우 총장은 별도의 학교행사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정할 수 있다.

② 각 주관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마다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며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.

1. 학과 주관 행사 : 학과장 및 전공담당교수
2. 총학생회, 대의원회 및 동아리 주관행사 : 교학처장
3. 그 밖에 학생단체행사 :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정하는 자

제5조(직무) ① 총괄책임자는 대학 학생 행사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관련 서류를 검토, 취합, 보고하고 필요시 활동을 지원한다.

④ 주관부서는 관계법령, 상급기관 및 대학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집단활동 전, 중,

후 에 걸친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총괄부서에 보고한다.

제6조(신청 및 승인) ① 행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사전 보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행사 계획을 취합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.

제7조(불허 및 취소) 총괄책임자,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, 이미 허가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 및 규정, 지침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
2. 기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
3. 안전관리 책임자 및 주관부서의 사전 안전교육이 미비한 경우
4. 해당지역 및 국가에 재해, 재난, 소요 등 안전상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
5. 기타 사회질서 및 면학풍토를 저해할 소지가 명백한 경우

제8조(안전교육) ① 주관부서는 행사 전 참가학생 전원에게 반드시 안전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. 다만 전 인원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대표학생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.

② 총괄부서는 행사 계획을 보고하기 전 대표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내부결재의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.

③ 인솔담당자는 행사 시작 및 종료, 출발 전 및 도착 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교육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④ 위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내용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.

1. 비상시 보고체계
2. 인근지역 비상연락망
3. 구급약의 지참 및 참여자 건강상태 전, 중, 후 점검
4. 이동수단 안전상태 및 운전자의 음주여부, 건강상태 점검
5. 이동 간 교통법규 준수
6. 화재 및 비상시를 대비한 사전 대피로 확인 및 대피방법
7.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(여행자 보험 가입 점검, 보상 적용 범위 확인 등)
8. 자율의사에 따른 음주
9. 폭언, 폭행, 가혹행의, 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 근절

⑤ 해외활동일 경우는 방문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9조(사전답사) ① 대학 승인을 받고 대규모 학생단체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그가 지명하는 교직원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사전답사를 실시할 수 있고,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전 항 이외의 학생단체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한 학생대표가 대신하여 사전답사를 진행하고 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체크할 수 있다.

제10조(행사 진행) ①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인솔교수 또는 교직원이 사전 배정되어야 한다, 다만 행사의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인솔담당자는 이동 및 행사 진행 간 현장에 위치하여 상급기관 및 대학의 지침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.

제11조(결과보고) 행사 종료 시 주관부서는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) 최초발견자, 인솔담당자, 행사 참가자 대표 등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의 절차에 따라 즉각 보고한다.

제13조(사고 대처 및 사고조사) ① 인솔담당자는 안전사고발생 즉시 원인을 파악한 후 안전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. 다만 인솔교수 부재, 유고시에는 총괄책임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총괄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고원인을 조사 후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③ 총괄책임자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때 혹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고, 대책본부의 장은 유관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매뉴얼) 대학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고, 매뉴얼은 현실에 맞게 수시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.

제15조(기타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대학 관련 규정 등을 따른다.

부칙

① **(시행일)** 본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